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09. 7. 23. 

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7월 2일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9년 7월 8일

다. 상 정 및 의 결 일 자
○ 2009. 7. 15 제282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 - 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ㅍ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전재원 교육국장)

## 가. 제안이유

○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0949호 2008. 8. 4. 전부개정)에 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○ "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"로 함 (안 제1조)
III. 검토보고 요지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$\square$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○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치•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이 2008. 8. 4.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인 "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7조"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V. 토론요지 : "생략"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

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의 3 과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와"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•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:---: | :---: |
| 제1조（목적）이 조례는「학교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으 과「학원의 설립 • 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」제 5조와 같은 법 률 시행령 제 4조제 4항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． | 제1조（목적） <br> 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같은 법 시행령 제 조와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|

## 관계법령 발췌

$\square$ 학교보건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0949호, 2008. 8. 4, 전부게정] 제7조(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)
(7)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위원임기•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

